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격 대여 행정처분기준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작 성 자	이름	김정훈
	담당부서 (과)	수리기술포		직급	시설주사보
	국장	윤순호		연락처	042-481-4966
	과장	이명선		이메일	undone09@mail .go.kr

2026. 07. 02.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윤순호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격 대여 행정처분기준 강화												
	2.규제조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3.위임법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자의 성명, 상호, 등록증, 자격증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년, 2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위반사항이 국가유산을 훼손과 인적·물적 피해 유발 및 수리 체계에 혼란을 주는 중대한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타 공사 관련법에서 대부분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것에 비하여 강경하게 처분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관련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1차 위반 즉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추진하고자 함												
	7.규제내용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성명, 등록증, 자격증 등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d colspan="2">국 가 유 산 수 리 업 자 등</td></tr><tr><td colspan="2">유 형</td></tr><tr><td colspan="2">인원수 또는 규모</td></tr><tr><td>피규제자</td><td>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td></tr><tr><td colspan="2">695개소 ('26.3월, 통계로보는 국가유산)</td></tr></table>			국 가 유 산 수 리 업 자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	695개소 ('26.3월, 통계로보는 국가유산)	
	국 가 유 산 수 리 업 자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													
695개소 ('26.3월, 통계로보는 국가유산)														
9.규제목표	위반 사항의 중요도·심각성에 맞는 행정처분기준 마련으로, 국가유산 관련 자격 및 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 조성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자격 등을 대여하거나 받을 시 기존의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아닌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부담이 생기나, 자격 대여가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고의적 목적의 위법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준법의식 강화를 통해 수리체계 또한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월등히 높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게 되어 비용편익 측면에서 유리한 규제임.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u>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u> (제22조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u>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u> (제22조 관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 사. (생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7호	영업 정지 1년	등록 취소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7호	등록 취소		
자. ~ 차. (생략)					자. ~ 차. (현행과 같음)				
카.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9호	영업 정지 1년	등록 취소		카.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9호	등록 취소		
파. ~ 버. (생략)					파. ~ 버.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타인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을 대여하는 경우 1차 위반이 적발되는 즉시 자격취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나, 이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2차 위반 시 등록취소되어 개인과 업자의 처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자격대여를 통해 무자격자가 수리하게 될 시 국가유산에 대한 손상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리업자등의 관련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1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자격대여 즉시 자격이 취소되는 기술자등의 처분기준과의 형평성 제고와 공사 관련 타 입법례에서 대부분 1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수리업자등이 자격대여 시 1차 위반으로 적발되는 즉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가유산수리업자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규제목표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격대여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무자격자의 국가유산수리 참여 예방에 따른 국가유산 훼손 방지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기존의 1차 위반 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공사 관련 타 법령 대비 경미한 처분으로, 무자격자 수리에 따른 사고 발생 시 국가유산 훼손과 인명 피해 등이 동반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심각성에 준하는 처분이 필요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국가유산수리업계는 '26.3월 기준 695개의 업체로 구성되어 타 공사 관련 분야 대비 그 규모가 매우 작아 유의미한 통계치를 활용할 수 없어 정성분석하였음
④ 대상 업종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
⑤ 예비분석내용		현행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하자담보 책임 이행 위반, 감리보고서 거짓 작성 등에 따른 처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격대여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심각성을 나타내기에 한계가 있어, 타 입법례와 동일하게 즉시 등록취소 처분으로 강화함이 타당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자격대여는 그 세부적인 대여사항에 따라 발생가능한 피해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등화적용은 타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타법사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7호~제7호의2에 따라 타 공사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자격대여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 있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시 이미 충분한 기술능력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격대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없으며, 관련 타법에서도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규제자가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국가유산수리업등은 총 695개('26.3월 기준) 업체로, 16개 시·도 평균 44개가 되지 않는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으로, 행정적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라 볼 수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집행에 따른 별도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격대여 행정처분기준을 기존 1차 위반 6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 등록취소에서 1차 위반 즉시 등록취소되도록 강화하여 자격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가유산수리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기반을 형성하여 국민이 지속적으로 국가유산을 안전한 환경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개정 시 해당사항을 업계 전반에 안내하고 관련 교육 또한 실시하여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예정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자격대여 행정처분 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자격 등을 대여하거나 받을 시 기존의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아닌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부담이 생기나, 자격 대여가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고의적 목적의 위법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준법의식 강화를 통해 수리체계 또한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월등히 높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게 되어 비용편익 측면에서 유리한 규제임.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자격대여 행정처분 기준 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국가유산수리업자등
활동제목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자격대여 행정처분기준 강화
비용항목	국가유산 자격대여 시 처분 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법 기준을 준수하는 대부분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격대여를 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들은 적발 시 이전의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아닌,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되는 간접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자격대여 방지에 따른 편익
편익항목	국가유산 부실수리 가능성 축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일반국민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자격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자격대여 시 발생 가능한 국가유산 부실수리 및 사고가 방지되어 국가유산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되고 안전한 국가유산 관람 환경 또한 확보되는 편익이 있음